



일본 EPA의 산업별 상품양허 실태와 시사점

김 양 희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 연구위원 (kyanghee@kiep.go.kr, Tel: 3460-1157)

1. 머리말
2. 분석방법
3. 산업별 상품양허 실태
4. 평가와 시사점

주요 내용

- ▶ ASEAN 회원국과의 양자간 FTA를 중시해 온 일본의 FTA 정책은 지난 12월의 일·ASEAN EPA와 일·필리핀 EPA 발효로 사실상 일단락되었음.
 - 이에 현 시점에서 일본의 기발효 EPA의 산업별 상품양허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일본 EPA의 특성을 이해하고 한·일 FTA 체결 전망을 가늠하는 데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 ▶ 일본은 기발효 EPA에서 제조업의 경우 거의 100% 양허한 반면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60.1% 양허에 그쳤음.
 - 9건의 EPA에서 제조업은 100%에 가까운 높은 양허율을 보이나 농수산업의 경우 자국 민감품목에 대한 보호주의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음.
- ▶ 이러한 양허실태에 비춰볼 때 한·일 FTA에서도 일본측이 획기적으로 자국 농수산물 보호기조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주요 대일 수출품목인 식품에서 일본은 기존의 양허추세를 유지할 것이며 품목군별로는 제4류(낙농품, 조란, 천연꿀 및 기타 식용 동물성 생산품)의 낮은 양허수준이 예상됨.
 - 반면 신선야채 및 과일의 경우 일본의 기발효 EPA에서 상대적으로 양허율이 높아 이 분야에 대한 일본측의 양허율 제고를 기대해 볼 만함.
- ▶ 따라서 한·일 FTA 협상이 재개되어도 상품무역 분야에서 일본측 농수산물 시장의 높은 수준의 개방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그 반대급부로 한국이 제조업에서 민감품목의 급격한 대일수입을 완화시키는 수준에서 양자간에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 나아가 한국측이 상품무역 분야에서 단기적으로 양허이익의 균형을 실현하지 못한다면, 설령 투자 및 무역규범 등 여타 분야에서 장기적으로 한·일 FTA의 이익이 기대되어도 한·일 FTA 체결에 대한 국내적인 지지기반 확보는 쉽지 않을 것임.

1. 머리말

■ ASEAN 회원국과의 양자간 FTA를 증시해 온 일본의 FTA 정책은 지난 12월의 일·ASEAN EPA와 일·필리핀 EPA 발효로 사실상 일단락되었음.

- 일본은 2004년 11월 한·일 FTA 협상 중단 이후 적극 FTA 추진에 나서 2009년 1월 현재 총 9건(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칠레, 태국,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ASEAN, 필리핀)의 FTA를 발효하였는데, 이 중 7건이 ASEAN 회원국으로서 그만큼 ASEAN을 증시한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일·베트남 EPA는 2008년 12월 협정이 체결되었고 캄보디아 및 라오스와는 투자협정으로, 미얀마와는 일·ASEAN EPA(AJCEP) 체결로 대체함에 따라 ASEAN 회원국의 FTA는 사실상 일단락됨.

○ 일·스위스 EPA는 2009년 2월 체결되었고 인도 및 호주와는 협상 중임.

■ 일본의 기발효 EPA는 대개도국 상품양허 위주의 협정임.

- 일본 정부는 자국의 FTA 정책을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라고 명명하며 EPA가 'FTA plus'라는 점을 강조하나, 실제 발효된 EPA는 양자간 협력의제를 포함한다는 점 외에는 NAFTA로 대표되는 '포괄적 FTA(Comprehensive FTA)'와 유사함.

○ '포괄적 FTA'란 상품무역뿐 아니라 서비스와 투자 분야도 개방하며, 지식재산권, 상호인증인정, 경쟁정책, 정부조달 등 다양한 무역규범의 조화도 포함하는 FTA를 의미함.

- 일본의 기발효 EPA 협정문에서 증시되는 것은 △ EPA 상대국에 대한 자국 공산품의 접근성 증대, △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자국 농수산물 시장의 소폭개방 기조 유지, △ 상대국 내 자국기업의 투자환경 개선 및 지식재산권 강화임.¹⁾

○ 8건의 발효된 EPA(일·ASEAN EPA 제외) 협정문에서 각 장(chapter)별 조문 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점하는 것이 상품양허 관련규정(관세철폐, 원산지규정, 통관 등)임.²⁾

■ 한·일 FTA 협상재개 및 성공적 체결을 좌우하는 최대 관건은 상품무역 분야에서 양허이득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임.

- 한·일 FTA 협상은 2004년 11월 6차 협상을 끝으로 결렬된 이래 4년이 지났으며 협상재개 여부 검토를 위한 양국

표 1. 일본의 FTA 추진 현황(2009년 2월 말 현재)

추진단계	대상	교역 비중(%)	투자 비중(%)	비고
발효 (14.7)	싱가포르	2.2		2002.11.30 발효 2007.9.2 개정의정서 발효
	멕시코	1.0	0.4	2005.4.1 발효 2007.4.1 시장접근조건 개선에 관한 의정서 발효
	말레이시아	2.4		2006.7.13 발효
	칠레	0.7	0.1	2007.9.3 발효
	태국	3.3		2007.11.1 발효
	인도네시아	2.7		2008.7.1 발효
	브루나이	0.2		2008.7.31 발효
	ASEAN	13.0	11.1	2008.12.1. 발효
	필리핀	1.4		2008.12.11 발효
체결 (1.5)	베트남	0.9	0.1	2008.12.25 체결
	스위스	0.6	0.2	2008.9. 실질적 타결
협상 중 (4.2)	인도	0.8	0.5	2008.10. 10차 협상
	호주	3.4	2.7	2008.10. 7차 협상
협상 중단 (15.1)	한국	6.1	2.4	2004.11. 6차 협상 이래 중단
	GCC	9.0	0.7	2007.1. 2차 협상 이래 중단
합계		34.6	14.7	-

주: 교역 비중은 2007년 수출입 총액 기준, 투자 비중은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누계액(2006년 말) 기준. 각 추진단계의 () 안은 해당 대상의 교역비중의 합계
자료: 外務省(2009.2).

1) 상품양허를 포함한 기발효 EPA의 협정문 분석은 김양희·정성춘·이형근·김은지(2008) 참조.

2) 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김양희(2008) 참조.

실무자협회가 2008년부터 2회에 걸쳐 개최되었으나 협상재개 전망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임.

- 향후 한·일 FTA의 성공적 체결 여부는 무엇보다도 상품무역 분야에서 한국측 제조업과 일본측 농수산업의 양허수준 여하에 달려있음.
- 이에 일본 FTA 정책의 핵심인 ASEAN과의 EPA가 일단락 되는 현 시점에서 일본의 기발효 EPA의 상품양허 실태를 품목별로 상세히 파악하는 것은 한·일 FTA 체결 전망을 기늠하는 데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 일본의 기체결 EPA의 중심축을 이루는 것은 다름 아닌 상품무역 분야이며 실제 협상시에도 HS 9단위를 기준으로 협상이 이루어지나, 그 실태를 산업별 업종별로 면밀히 분석한 자료는 많지 않으며 특히 품목수 기준으로 농수산업의 양허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실정임.

o 일본 정부는 EPA 협상시 주로 무역액 기준을 양허기준으로 삼으며 전 품목의 EPA 양허수준만 공개하고 있어, 품목수 기준으로 산업별 양허수준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가 곤란함.

- 이에 일본 재무성이 제공하는 각 EPA의 HS 9단위 기준 세부품목별 상품양허 일정표(staging table)를 토대로 ‘양허율’을 산출하여 일본 EPA의 산업별·업종별 양허실태를 분석함.

2. 분석방법

■ 이 글에서는 일본 EPA의 품목수 기준 세부품목별 양허실태를 파악함.

■ 일본 기체결 EPA의 세부품목별 상품양허 실태 분석을 위해 일본 재무성이 제공하는 HS 9단위 기준(2007년도 개정판) 세부품목별 양허유형을 토대로 개별 품목별 DB를 구축하였음.

표 2. 일본의 EPA의 상품양허 유형

유형	설명	비고
A	발효즉시 철폐	전 EPA에 공통
B	2006.4.1에 철폐	2003년 일·싱가포르 EPA 발효시에만 적용
C1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8회 균등 인하하여 2010.1.1에 철폐. 단, C1, C2, C3 각각 발효시 관세율은 2.8%, 3.1%, 3.9%	
C2		
C3		
D	2004.1.1에 관세율을 6.5%로 하여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6회 균등인하하여 2010.1.1에 철폐	
E	2008.1.1에 철폐	
Fn	- 2008.1.1부터 ‘n+1’번째 해까지 균등한 관세인하를 통해 철폐(n=5, 6, 7, 10, 15) - 첫 회: 2008.1.1, 2회 이후: 매년 4.1	2007년 일·싱가포르 EPA 개정시 추가
P	기준세율에서 14.9%까지 6회의 균등한 관세인하. 첫 회는 2008년 1월 1일에, 2회부터는 매년 4월 1일에 인하하여 2012년 4월 1일에 14.9%로 됨.	
B1	2006년 4월 철폐	일·멕시코 EPA에만 적용
B2	2010년 4월 철폐	
Bn	발효일부터 균등한 관세인하를 통해 n번째 해에 철폐 (n= 4, 5, 6, 8)	
C	9년 내 철폐	
Ca	10년 내 철폐	
E	관세할당(한도 내: 무관세, 한도 외: 발효 10년 후 관세철폐)	전 EPA에 공통 적용
Bn	- 발효일부터 ‘n+1’번째 해마다 균등한 관세인하를 통해 ‘n+1’번째 해에 철폐(n= 5, 6, 7, 9, 10, 15) - 첫 회: 협정발효일, 2회 이후: 4월 1일	
P	관세인하	
Q	관세할당(한도 내: 무관세/인하, 한도 외: 과세/비양허)	
R	재협의	
X	제외	

주: 1) B8, Ca에는 관세할당(무관세)을 설정하고 있는 품목이 있음.
2) ‘E’ 및 ‘P’의 경우, 동일한 유형이라도 일본과 멕시코에 적용하는 것과 여타 EPA 상대국에 적용하는 것이 상이함.
자료: 각 협정문을 토대로 필자 작성.

- 이를 국제표준분류방식인 HS 2단위 기준 97류로 분류한 뒤 편의상 농수산업과 제조업으로 대분하고 이를 다시 각기 4개 업종 및 13개 업종으로 세분하여 산업별·업종별 특징을 분석하였음.
- 분석대상은 2008년 9월 1일 현재 기발효된 7개의 EPA 중 양자간 EPA에 비해 양허수준이 낮은 ASEAN을 제외한 8건의 EPA임.
- 한편 이 DB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총품목수가 일본정부의 공식통계와 상이하므로 유의해야 함.
 - 첫째, 2007년의 HS 조약의 개정에 따라 기존의 한 품목에 두 개 이상의 세율이 설정된 경우 혹은 일본에서 사용하는 HS 최하위단위인 9단위 품목이 더 세분되어 있는 경우³⁾ 모두 별개의 두 품목으로 간주하였음.
 - 둘째, 동일품목이 단순실수로 중복기재된 경우 한 품목으로 수정하였음.

■ 일본 EPA의 상품양허 유형은 일·말레이시아 EPA를 기점으로 정형화됨.

- 일본의 상품양허 유형(category)은 시기적으로 최초의 EPA인 일·싱가포르 EPA와 두 번째인 일·멕시코 EPA 체결까지의 시행착오를 포함하는 초기단계, 그리고 이후 일·말레이시아 EPA를 기점으로 정형화되는 단계로 나뉨.
 - 가령, 일·싱 EPA에서는 크게 4개의 유형(A, B, C, D)만 나타나며 이때는 양허품목만 열거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형식을 채택했으므로 ‘재협약’나 ‘제외’는 아예 없다가 2007년의 개정시에 여타 유형이 나타나며 두 번째 EPA(일·멕시코 EPA)에서는 양허유형이 14개에 달함.
 - 따라서 일·싱가포르 EPA는 2002년 발효시와 2007년 개정시의 양허내용을 모두 합하여 양허율을 산출하였음.
 - 일·싱 EPA와 일·멕시코 EPA에서 모두 ‘E’ 유형이 있으나 그 의미가 각기 다르고, ‘P’는 이들과의 EPA와 이후의 EPA에서 각기 다른 의미로 쓰임.

- 세 번째인 일·말레이시아 EPA부터 상품유형이 크게 6개(A: 즉시철폐, Bn: 단계적 철폐, P: 관세인하, Q: 관세할당, R: 재협약, X: 제외)로 단순화되어, 이때부터 일본이 EPA 경험을 축적하여 일본 주도의 EPA를 추진하였음을 알 수 있음.
- 이 글에서는 상품양허 유형 중 ‘X(제외품목)’를 뺀 모든 유형을 양허품목으로 간주하여 양허율을 산정함.
 - ‘R(재협약)’은 사실상 제외품목이며 재협약시 반드시 양허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며 더욱이 일본 EPA에서 그 비중이 낮지도 않으나, 여기서는 양허에 포함시키되 필요시 ‘제외’와 병기하기로 함.

■ 양허율 산출방법 중 품목수 기준 양허율을 파악

- 일반적으로 FTA에서 상품시장의 개방도 파악을 위해 「양허율(concession rate)」이란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는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총수입에서 양허품목이 점하는 비중(%)’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품목수 기준(tariff line base)과 무역액 기준(trade value base)의 두 가지 양허율이 있음.
-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품목수 기준 양허율’과 ‘무역액 기준 양허율’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여 산출함.
 - 품목수 기준 양허율은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총수입품목에서 점하는 양허품목의 비중(%)으로 정의할 수 있음.
 - 무역액 기준 양허율은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총수입액에서 점하는 양허품목액의 비중(%)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이하에서는 위 두 가지 양허율 중 특히 종래 파악이 곤란했던 품목수 기준 양허율 분석을 통해 일본의 상품양허 실태를 파악하고자 함.

3. 산업별 상품양허 실태

■ 산업별 실태

- 일본의 8건의 EPA의 평균 양허율은 농수산업 60.1%, 제조업 97.2%이며, 10년 이내 무관세화율은 전자 48.3%, 후자

3) 예를 들면 일·태 EPA에서 080300100(신선바나나)은 TRQ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계절관세품목이어서 한도의 세율이 10%(4~9월)와 20%(10~3월)의 두 가지이므로 이를 두 개의 별도품목으로 간주하였음.

96.9%로 양자간 격차가 큼.

- 8개국 평균 기준 농수산업과 제조업의 ‘즉시철폐’ 비중은 각각 30.7%, 93.6%로 전자에 비해 후자가 3.3배나 높은 수준이며, 사실상 제외라 할 수 있는 ‘재협약’ 비중도 전자와 후자가 각각 7.4%, 0.3%로 대조를 이룸.
- 이를 통해 일본 정부가 제시하는 자국의 8건의 기발효 EPA의 무역액 기준 10년 내 무세화율 평균치가 92.8%이나 품목수 기준으로는 86.3%에 그치는 원인이 다름 아닌 농수산업의 소폭 양허 때문임을 유추할 수 있음.
- 일본 재무성(2008)의 한 내부자료는 위 8건 EPA의 일본측 10년 내 무세화율을 전 산업을 대상으로 무역액 기준, 품목수 기준(HS 9단위 및 HS 6단위)으로 각각 제시하고 있어 산업별·

업종별 실태는 알 수 없었음.

- 특히 농수산업의 ‘제외(X)’ 비중이 40.0%이나 제조업은 2.8%에 불과함.
- <그림 1>에 나타나듯이 일본의 기체결 EPA에서는 농수산업과 제조업 간 개방폭의 편차가 심해, 이를 종합한 전 품목 대상의 양허율만으로는 실제 개방실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더욱이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농수산업의 경우 최초의 EPA(일·싱가포르 EPA)에서 일·태국 EPA까지는 양허율이 점차 상승추세를 보이나 이후 일·필리핀 EPA는 꾸준히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어 주목됨.

표 3. 일본의 기발효 EPA의 산업별 양허 현황(2007년 HS 9단위 기준)

(단위: %)

상대	유형 ¹⁾	즉시 철폐	단계적 철폐	관세 인하	관세 할당	재협약	제외	합계	양허율	무세화율 ⁴⁾
	싱가포르 ²⁾	농수산업	30.2	23.3	0.0	0.0	0.0	46.5	100.0	53.5
제조업		94.5	0.6	0.0	0.0	0.0	4.9	100.0	95.1	95.1
합계		80.1	5.7	0.0	0.0	0.0	14.3	100.0	85.7	84.2
멕시코	농수산업	31.4	10.1	0.4	3.8	1.7	52.6	100.0	47.4	41.5
	제조업	89.2	8.1	0.0	0.1	0.0	2.7	100.0	97.3	97.3
	합계	76.1	8.5	0.1	0.9	0.4	14.0	100.0	86.0	84.6
말레이시아	농수산업	30.5	23.3	0.3	0.1	7.5	38.3	100.0	61.7	47.0
	제조업	94.9	2.8	0.0	0.0	0.5	1.8	100.0	98.2	97.7
	합계	80.5	7.4	0.1	0.0	2.1	10.0	100.0	90.0	86.3
칠레	농수산업	29.9	20.1	0.2	1.6	12.3	35.9	100.0	64.1	47.2
	제조업	93.8	3.5	0.0	0.0	0.1	2.6	100.0	97.4	97.3
	합계	79.4	7.2	0.1	0.4	2.8	10.1	100.0	89.9	86.0
태국	농수산업	31.0	24.5	0.7	0.3	14.5	28.9	100.0	71.7	55.5
	제조업	94.2	3.3	0.0	0.0	0.9	1.7	100.0	98.3	97.5
	합계	80.0	8.1	0.2	0.1	3.9	7.8	100.0	92.2	88.0
인도네시아	농수산업	30.4	19.8	0.0	0.1	12.6	37.0	100.0	63.0	46.4
	제조업	94.1	3.5	0.0	0.0	0.5	1.9	100.0	98.1	97.6
	합계	79.8	7.2	0.0	0.0	3.2	9.8	100.0	90.2	86.1
브루나이	농수산업	30.0	20.5	0.0	0.0	10.2	39.4	100.0	60.6	47.0
	제조업	93.9	1.4	0.0	0.0	0.7	4.1	100.0	95.9	95.3
	합계	79.6	5.7	0.0	0.0	2.8	12.0	100.0	85.2	84.4
필리핀 ³⁾	농수산업	31.9	25.2	1.4	0.5	0.0	41.0	100.0	59.0	55.1
	제조업	93.8	3.5	0.0	0.0	0.0	2.7	100.0	97.3	97.3
	합계	79.9	8.4	0.3	0.1	0.0	11.3	100.0	88.7	87.8
8개국 평균	농수산업	30.7	20.9	0.4	0.8	7.4	40.0	100.0	60.1	48.3
	제조업	93.6	3.0	0.0	0.0	0.3	2.8	100.0	97.2	96.9
	합계	79.4	7.3	0.1	0.2	1.9	11.2	100.0	88.5	8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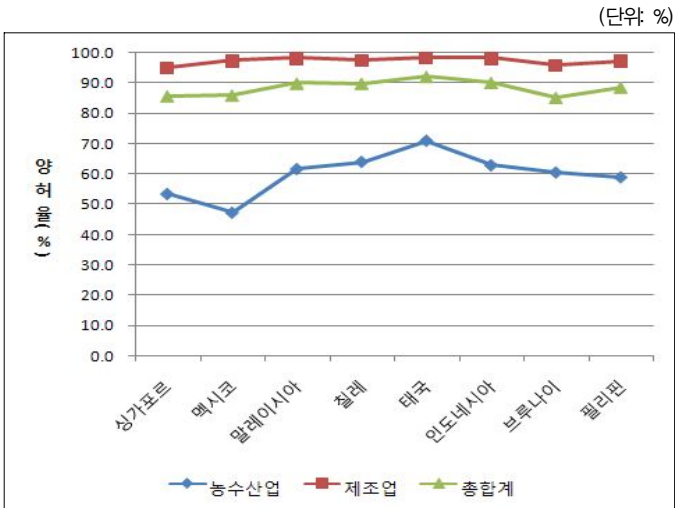
주: 1) ‘즉시철폐’는 <표 2>의 양허유형 A, ‘재협약’은 R, ‘관세인하’는 P, ‘관세할당’은 Q, ‘제외’는 X, ‘단계적 철폐’는 그 밖에 유형을 의미하며 양허율은 ‘X’를 제외한 모든 양허의 합계임.

2) 2002년 발효시 양허내용과 2007년 개정시 양허내용을 합쳐서 계산함.

3) HS 9단위 품목이 2개로 세분되어 그 각각에 상이한 유형이 설정된 11개 품목은 10단위의 22개 품목으로 간주하였으며, 재협약과 제외의 구분이 없으나 편의상 제외로 간주하였고, 관세할당은 5년 이내 무세 혹은 저율 TRQ 배정 후 재협약의 품목을 의미함.

4) 2006년 4월의 실행관세율 기준, 2002년 HS code 9단위의 EPA 발효 후 10년 이내에 무세화되는 비중, 일본 재무성의 내부자료와의 비교를 위해 작성함.

그림 1. 일본의 기체결 EPA의 산업별 양허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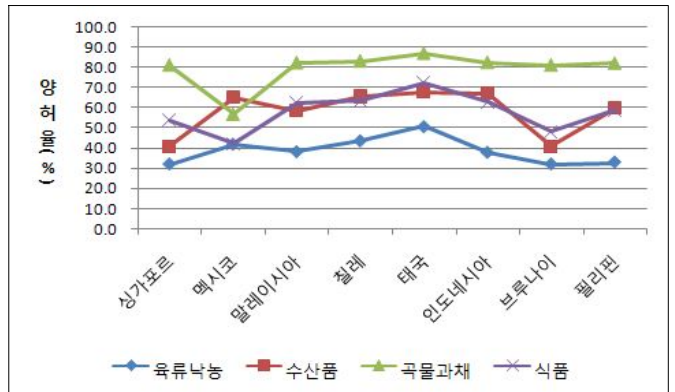


- 이는 일본이 그간 9건의 EPA 체결실적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호주의 기조를 유지해 왔음을 의미함.
- 산업별로 농수산업과 제조업의 현격한 양허차이는 주로 양자간의 경쟁력의 비대칭성, 일본의 농수산업에 대한 시각, 농수산업계의 조직력에 기반한 협상력 발휘 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됨.

■ 농수산업 실태

- 농수산업의 양허실태를 주요 업종별로 살펴보면 EPA 상대를 막론하고 육류·낙농이 가장 낮은 양허수준을 보이며 곡물·과채가 대체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 육류·낙농업이 농수산업 전체의 낮은 양허수준을 초래하는 주요인임을 알 수 있음.
- 육류·낙농 중 특히 제4류(낙농품, 조란, 천연꿀 및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의 양허율은 8건의 EPA 평균 11.4%에 불과함.
- 곡물·과채도 8건 평균은 79.6%로 농수산업 중 최고 수준이나 이 중 제10류(곡물)은 40.6%에 불과함.
- 식품은 여타 업종에 비해 가장 세부품목별 편차가 심해 제05류(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와 제06류(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인경·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절화와 장식용 잎)는 멕시코(93.9%)를 제외한 모든 EPA에서 100% 즉시철폐를 단행하였음.

그림 2. 일본 농수산업의 업종별 양허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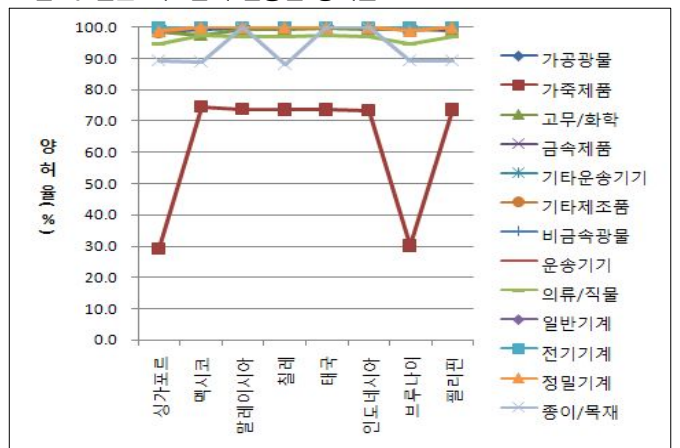


- 단, 싱가포르의 경우 2002년 발효시 제05류 4개품목, 제06류 3개 품목은 제외품목으로서 2007년 개정시 즉시철폐품목이 되었음.
- 식품뿐 아니라 농수산업 전체에서 가장 낮은 양허수준을 보이는 것은 제19류(곡물·분·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로서 8건 평균 6.3%이며, 일·멕시코 EPA에서는 142개 전 품목이 제외되었음.

■ 제조업 실태

- <그림 3>은 일본 제조업의 각 EPA별 업종별 양허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8건의 EPA에 공히 가죽제품의 현격히 낮은 양허율이 드러나 이 업종이 가장 민감품목임을 단적으로 보여 줌.
- 가죽제품에 대한 낮은 양허율은 일본사회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일본 내 가죽제품 생산자는 대부분 일명 ‘부락구(部落)’로 일컬어지는 사회 최하층민으로서, 일본 정부는 사회적 약자 보호정책의 일환으로 이들의 생계지원을 위해 가죽제품의 국내시장을 보호하고 있음.

그림 3. 일본 제조업의 업종별 양허율



- 그 밖에 종이/목재, 의류/직물 등 비기술집약적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00%에 가까운 높은 양허율을 나타내고 있어 일본의 EPA 대상이 대체로 자원집약적·노동집약적인 개도국이라는 점을 엿볼 수 있음.
- HS 2단위 기준 제64류(신발류·각반 및 이와 유사한 것)와 이들의 부분품에 대한 8건의 EPA 평균이 38.9%로 가장 낮으며 싱가포르와 브루나이는 총 98개 품목을 모두 제외하였고 제42류(가죽제품·마구·여행용구·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의 거트(누에거트 제외)의 제품)도 양허율은 67.8%이나 위 두 나라는 40개 품목을 모두 제외시켰음.

4. 평가와 시사점

■ 일본은 2008년 말을 기점으로 사실상 대ASEAN FTA 정책을 일단락지었는데, 이는 대부분 일본의 농수산물 시장 보호기조에 충실한 EPA였음.

- 지금까지 일본 EPA에서 일본측의 산업별·업종별 양허율을 품목수 기준으로 파악하는 것이 곤란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분석을 통해 일본의 농수산물 시장의 양허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음.
- 품목수 기준 일본 EPA의 양허율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일본이 기발효 EPA에서 자국이 강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제조업의 기술집약적 업종에 대해서는 거의 100% 양허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가능함.
- 반면 지금까지 대부분 개도국과 EPA를 체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주요 생산품목인 농수산물에 대한 일본측의 품목수 기준 평균 양허율이 60.1%에 그쳐, 자국 시장에 대한 상대국의 접근성 증대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됨.
- 일본이 지금까지는 자국 농수산물 시장의 보호기조 유지가 가능한 나라와의 FTA에서 제조업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농수산물 시장을 양허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향후 이 기조의 유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실험대는 일본의 제3위 농수산물 수입국인 호주와의 FTA임.

○ 그러나 현재까지 일·호주 EPA 협상은 일본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여부를 둘러싼 이견으로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음.

■ 일본의 기발효 EPA의 양허실태에 비춰볼 때, 농수산물 생산 구조가 유사하고 인접한 한국과의 FTA에서 일본측이 기존의 농수산물 보호기조를 크게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농수산업에서는 주요 대일 수출업종인 식품에서 일본이 기존의 낮은 양허추세를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며, 품목군별로는 제4류(낙농품, 조란, 천연꿀 및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의 낮은 양허수준이 예상됨.⁴⁾

○ 반면 신선야채 및 과일 등의 경우 일본의 기발효 EPA에서 상대적으로 양허율이 높아 한·일 FTA에서도 그 정도의 개방수준은 기대해 볼 만함.

- 제조업에서는 품목별로 대체로 100%에 가까운 양허수준을 보인 일본의 기발효 EPA의 선례를 들어 일본시장 개방수준을 높게 요구하는 것이 수월할 것으로 보임.

○ 단, 한국의 경쟁우위 품목인 섬유/직물의 경우는 일본측의 수세로 인해 난항이 예고되며, 석유화학품도 일본과 경합관계에 있는 범용품의 경우 일본측이 기발효 EPA 수준만큼 양허율을 높이는 것이 어려울 것임.

■ 따라서 한·일 FTA 협상이 재개되어도 상품무역 분야에서 일본 농수산물 시장의 높은 수준의 개방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오히려 그 반대급부로 한국측이 제조업에서 민감품목의 급격한 대일 수입을 완화시키는 수준에서 양자간에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 나아가 한국측이 상품무역 분야에서 단기적으로 양허이익의 균형을 실현하지 못한다면, 설령 투자 및 무역규범 등 여타 분야에서 장기적으로 한·일 FTA의 이익이 기대되어도 한·일 FTA 체결에 대한 국내적인 지지기반 확보는 쉽지 않을 것임. **KIEP**

4) 한·일 농산물 교역 현황 및 한·일 FTA 협상시 예상되는 주요 관심품목에 대해서는 김양희·정성춘·정지원·이형근(2008) 참조.